국립생태원 공고 제2025 - 49호

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·보완된 생태·자연도 일부도면(안)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5년 4월 18일 국립생태원장

생태・자연도(生態・自然圖) 수시고시(안) 국민열람 공고

1. 대상지역 :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380-60 일대 외 3개 지역

2. 근거법령 :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

3. 생태·자연도 수정・보완 내용 (도면은 붙임 참조)

구분	대상지역	도엽	생태·자연도 등급		비고
			당 초	수정·보완(안)	-1 -1
평택 (가재)	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380-60 일대	서정 377133	2등급	3등급	식생
평택 (서탄1)	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산119-3 일대	서정 377133	2등급	3등급	식생
평택 (서탄3)	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사리 산11 일대	서정 377133	2등급	3등급	식생
평택 (서탄4)	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사리 722-1 일대	서정 377133	2등급	3등급	식생

4. 국민열람 실시

생태·자연도 일부 수정 도면(1:25,000)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 생태원 홈페이지(http://www.nie.re.kr)에 공휴일을 제외한 14일간(토요일 포함) 공개합니다.

5. 의견제출

이 생태·자연도 수시고시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 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내(토요일 포함)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생태원장(참조 : 생태조사연구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생태·자연도 수시고시(안)에 대한 의견서

※ 생태·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의견 제출 방법

- 공문(전자문서) : 생태·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장 (참조:생태조사연구실장)에게 의견 제출

※ 문의 : 국립생태원 생태조사연구실(041-950-5672, 5680, 5682)